

비성적(非性的)인 이중관계의 윤리*

박 외 숙[†]

울산대학교

고 향 자

숙명여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의도적 혹은 우연적으로 내담자와의 치료적 관계 이외에 얽힐 수 있는 이중관계 중에서 특히 성적인 친밀성이 배제된 제2 혹은 제3의 관계 즉 이중관계 혹은 다중관계에 대한 윤리적 이슈를 살펴보았다. 이중관계에 대한 윤리규정은 상담관련 학회에서 안내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모든 사례에 적용하기에는 일반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정신건강 관련 연구에서도 서로 상반되고 혼란스런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성적인 이중관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에는 일관성 있게 비윤리적이라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만 비성적인 이중관계에 대하여는 해롭다는 주장에서부터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다. 학회에서 제공하는 윤리규정 조차 어디까지의 이중관계를 윤리적이라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의 조향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회에서 제시하는 윤리규정을 살펴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행연구들을 개관한 다음, 이중관계를 윤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모델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결론을 내렸다.

주요어 : 상담관계, 이중 혹은 다중관계, 비성적인 관계, 경계, 상담의 윤리

* 본 연구는 울산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박외숙,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상담교육전공), 울산시 남구 무거동 산29 남울산우체국 사서함 18호
Tel : 052) 259-2098, E-mail : weasook@hanmail.net

상담자-내담자 관계는 특별한 관계이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한 사람(내담자)은 자신의 사생활을 드러내고 또 한 사람(상담자)은 내담자의 사적이고 은밀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공감하고 그러면서도 객관성을 잃지 않고 전문적인 기술을 동원하여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상담관계는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친구관계와 유사하지만, 자신의 문제에 도움을 청하는 의존적인 내담자와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공하는 상담자의 관계라는 점에서 친구관계와 구별된다. 치료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들과도 구별 되어진다(Kagle & Giebelhausen, 1994).

상담관계는 힘의 불균형이 깔려있는 관계이다. 이 점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영향력과 힘을 남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상담자의 윤리 문제가 대두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익에 우선하도록 배려하고 내담자를 착취할만한 변인들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미리부터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상담관계 자체만도 어려운데 상담관계가 제2 또는 제3의 관계와 얽히게 된다면 상담자의 객관성, 내담자의 비밀보장, 상담자의 힘과 영향력의 남용, 등의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상담의 윤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중관계 혹은 다중관계의 이슈이다. 한 마디로, 이중관계란 상담자가 내담자와 상담관계를 맺기 이전이나 상담기간 동안에 혹은 상담이 종결된 이후에 내담자와 제2의 관계 즉 상담자와 친구, 피고용자, 사업 파트너, 가족, 이성 관계로 연결되는 것을 말하며, 그 외에 또 다른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를 다중관계라고 한다(Kagle & Giebelhausen, 1994). 이중관계의 유형을 연구한 Anderson & Kitchener(1996)과

Nigro(2004)에 의하면 치료자가 의도하여 이루어지는(intentional) 유형이 있고 상황적으로 우연하게 이루어지는(circumstantial) 유형이 있다. 상담자의 평가에 의존하여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분류한 이중관계 유형에는 우연하게 일어나는 관계, 전문적인 관계, 일터에서 일어나는 관계, 내담자의 중복, 사교적으로, 가족으로, 우연한 경계 침해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곱 가지가 있다.

그동안 상담학계에서 성적인 이중관계 즉 상담자가 상담관계 외에 내담자와 로맨틱한 관계 혹은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상담관계가 이미 종결된 후라 할지라도 내담자에게 분명하게 해로우며 비윤리적이라고 규정하는데 분명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Moleski & Kiselica, 2005). 성적인 이중관계에 대하여는 윤리규정도 분명하며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아왔지만 비성적인 이중관계는 그 윤리 기준도 모호하고 비교적 덜 관심을 받아왔다(Kagle & Giebelhausen, 1994). 이중관계의 윤리에 대하여 정신건강 관련 대부분의 논문에서 내담자와의 성적인 관계가 해로우며 착취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일치된 견해가 보고되고 있지만, 비성적인 이중 혹은 다중 관계의 잠재적 해로움과 이로움에 대하여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고 다양한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Barnett & Yutzenka, 2002; Congress, 2001; Hill, 2001; Mamalakis, 2001; Nickel, 2004; Reamer, 2003). 물론 대부분 학회의 윤리강령에서 비성적인 이중관계가 성적인 이중관계와 마찬가지로 비윤리적이라는 입장(Kagle & Giebelhausen, 1994)이 유력하지만, 비성적인 이중관계에 대하여는 과거에 비하여 최근에 다소 수용적인 변화 추세에 있으며 (AC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미국상담

학회의 2005년도 윤리강령을 1995년도 판과 비교해보면), 학계에서도 시비가 엇갈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비성적인 이중관계도 내담자에게 해가 된다는 강경한 입장의 주장이 이어지는가 하면, 상담이 이루어지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현실적 요구를 수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여건에서는 이중관계가 해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상담관계를 촉진시키는 치료적 역할을 하여 결국 내담자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정 반대의 주장(Boyd-Franklin & Bry, 2000; Herlihy & Corey, 1992; Lazarus, 1994; Nickel, 2004; Reamer, 2003; Tomm, 1993; Zur & Lazarus, 2002)도 제기되고 있다. 즉 비성적인 이중관계의 해로움과 이로움에 대하여 상담학계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비성적인 이중관계가 어떤 경우에 이롭고 어떤 경우에 해로운지에 대하여는 아직도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대부분의 윤리규정도 모호하다(Remley, Hermann, & Huey, 2003; Moleske & Kiselica, 2005). 더구나 이중관계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여건에 놓여있는 우리나라 상담학계는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그런 제도적 여건이란 전문상담교사 자격이수 과정 중에 있는 교사들이 서로 상대평가를 받는 경쟁적 관계 속에 있으면서 함께 집단상담의 참가자로서 마음 나누는 경험을 하는 경우, 상담 과목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교수가 직접 집단을 리드하는 경우, 학교현장에서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상담하는 경우, 강의 담당교수가 상담자가 되고 대학원 논문 지도교수가 되고 슈퍼바이저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상담자들 역시 이중관계의 딜레마 상황에서 많은 혼란을 경

험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중관계를 윤리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음의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미국과 한국의 주요 상담관련 학회에서 규정하는 비성적인 이중관계 관련 윤리조항을 제시한다. 둘째, 학계에서 논쟁 중에 있는 비성적인 이중관계의 해로움과 이로움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셋째, 비성적인 이중관계를 우리 문화의 특성과 관련지어 평가하고 이해해보고자 한다. 넷째, 비성적인 이중관계가 어떤 경우에 윤리적이며 어떤 경우에 비윤리적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이중관계로 인한 윤리적 딜레마에서 내담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돕기 위하여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다.

이중관계 관련 윤리규정

우선 미국심리학회(AP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2002년도 윤리규정을 살펴본다. 이중관계 관련 조항은 3.04(해로움을 피하기)와 3.05(다중관계)에 나타나있다. 이외에도 특히 성적인 이중관계에 관하여는 10개의 윤리기준(ethical standards) 중에서 일곱 번째인 ‘교육과 훈련’, 열 번째인 ‘심리치료’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교육과 훈련 관련 윤리기준에서는 ‘학생과 수련생과의 성적인 관계(7.07)’를 다루고 있고, 심리치료 관련 윤리기준에서는 현재 치료중인 내담자/부모와의 성적인 관계(10.05), 현재 치료중인 내담자/부모의 친척이나 중요타인들과 성적인 관계(10.06), 과거의 성적 대상과의 치료(10.07), 과거에 치료했던 내담자/부모와의 성적인 관계(10.08)를 각각 구별하여 상담자에게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중관계 중에서도 특히 비성적인 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다.

3.04 (해로움을 피하기)

심리학자들은 그들의 내담자/환자, 학생, 수련생, 연구 참여자, 기관 내담자, 그리고 그들과 일하는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일 그러한 해가 불가피하다고 예상된다면 그 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05 (다중관계)

(a) 다중관계는 한 개인과 전문적 역할 관계에 있는 심리학자가 (1) 동일한 개인과 동시에 다른 종류의 역할관계를 갖고 있을 때, (2) 전문적 관계를 갖고 있는 그 개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또는 (3) 그 개인 또는 그 개인과 가까운 사람과 미래에 다른 종류의 관계를 갖자고 약속을 할 때 일어난다. 심리학자는 그 다중관계가 심리학자의 객관성, 능력, 심리학자로 기능하는 데 효율성 및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현재 전문적 관계를 갖고 있는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착취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다중관계를 갖는 것을 삼가 해야 한다. 전문적 기능의 손상이 없고 착취할 위험이 없으며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중관계는 비윤리적이지 않다. (b) 만일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해로운 성격을 가진 다중관계가 발생된다면, 심리학자는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의 최대한의 유익을 위해 윤리규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절차를 밟아야 한다. (c) 심리학자가 법정 명령, 기관의 정책, 그 외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재판 및 행정적 절차 내에서 한 가지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될 때, 심리학자는 예상되는 역할들, 비밀보장의 범위, 그에 따라서 일어날 변화에 대해 처음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미국심리학회에서는 위에서 보다시피 다중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다중관계가 심리학자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나 내담자에게 착취적인 위험이 있을 때 삼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심리학자의 능력이나 내담자의 이익에 손상이 없다면 다중관계라고 하여도 윤리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다음에는 이중관계에 관한 미국상담학회(AC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의 윤리조항이 10년 전에 비하여 최근 많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1995년도 판과 2005년도 판에서 변화된 주요 부분, 그리고 2005년도 판의 이중관계 관련 윤리조항을 살펴본다. 미국상담학회의 윤리강령은 10년 전이나 후나 8개의 섹션(상담관계, 비밀보장, 전문가의 책임, 다른 전문가들과의 관계, 평가/측정/해석, 교육/훈련/슈퍼비전, 연구와 출판, 그리고 윤리적 이슈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뉘어져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섹션인 A가 상담관계(The counseling relationship)에 관한 내용이다.

1995년 ACA Code

A.6. 이중관계

가능하다면 이중관계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자는 자신이 내담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음을 인식하고,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내담자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크거나 전문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이중관계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이러한 관계의 예들로는 내담자와의 가족적, 사회적, 금전적, 사업상 또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것들 외에도 다양한 예가 있다). 이중관계를 피할 수 없을 때 상담자는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 자문, 슈퍼비전, 그리고 전문적 판단이 손상되지 않고 어떠한 착취 관계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는 문서자료 등을 통해 미리 주의를 주어야 한다(F.1.b. 참조). 상하관계의 경우, 상담자는 자신과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상의, 또는 평가관계에 있는 상사나 아랫사람을 내담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보면, 1995년도까지는 이중관계가 전문가의 능력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내담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피할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상하관계나 평가관계의 경우에는 상담관계를 금지시키고 있다.

2005년 ACA Code

A.5. 내담자와의 관계 및 상담자의 역할

A.5.c. 전문성이 배제된 관계(성적이거나 이성적인 접촉/관계를 제외한 다른 경

우들)

상담자가 과거 혹은 현재 내담자, 그들의 배우자/애인, 또는 내담자의 가족 구성원과 비전문적 관계를 갖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단, 그 접촉/관계가 내담자에게 이로울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A.5.d. 참조).

A.5.d. 유익이 되는 관계

상담자의 과거 혹은 현재 내담자와 비전문적 관계를 갖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상담자는 반드시 그들과 접촉하기 이전에(가능하다면) 사례를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그 관계의 정당성, 잠재적 유익, 그리고 과거 혹은 현재 내담자 및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중요타인들에게 어떤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지에 대하여도 기록해야 한다. 그러한 접촉/관계는 반드시 내담자의 동의하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과거 혹은 현재 내담자 및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중요타인들과의 비전문적 관계가 의도하지 않은 해를 갖고 있을 경우, 상담자는 반드시 그러한 해를 바로 잡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였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유익이 되는 관계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단, 다음의 예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 예) 결혼식/약혼식 혹은 졸업식과 같은 공식적 행사에의 참석, 현재 혹은 과거의 내담자가 제공하는 물건 혹은 서비스의 구입(단,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물물 교환은 금지), 아픈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병문안, 전문적인 협회, 집단, 또는 단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회원 간의

관계(A.5.c. 참조).

A.5.e. 전문적 관계의 변화

상담자가 원래 혹은 가장 최근에 성립된 전문적 관계에 변화를 갖고 올 때는 반드시 내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내담자에게 서비스의 변화에 대해 거절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상담자의 역할 변화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상담에서 관계 혹은 가족 상담으로의 변화, 또는 그 반대의 경우
2. 비법정적(nonforensic) 평가의 역할에서 치료적인 역할, 또는 그 반대의 경우
3. 상담자에서 연구자로의 변화(즉 내담자가 자신의 연구의 대상이 될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4. 상담자에서 중재자로의 변화,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전문적 역할 관계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결과들(예. 금전적, 법적, 개인적, 또는 치료적)을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A.7. 다수의 내담자들

서로 관계를 갖고 있는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상담자가 동의하였을 때, 상담자는 그 관계의 성격과 어떤 사람(들)이 내담자가 되는지 서비스의 시작에 분명히 하여야 한다. 만약 상담가가 잠재적으로라도 충돌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해진다면, 상담자는 반드시 적절한 상황 하에 그 역할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조정 또는 철회하여야 한다(A.8.a.와 B.4. 참조).

1995년도 윤리강령에 비하여 10년 후인 2005년도에는 이중관계에 관하여 많이 구체화되었으며 이중관계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시사하고 있다. 인간적인 교류(예를 들면 병문안, 결혼식과 졸업식 같은 내담자의 주요한 공식적 행사에 참여)에 대하여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이중관계에 대하여 상담자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상담 일지에 기록하고 내담자와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서 내담자에게 돌아갈 잠재적 불이익을 최대한 막아야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상담학회 윤리강령의 1995년도 판에 비하여 2005년도 개정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변화된 부분을 Glossoff & Kocet(2005)는 “Highlights of the 2005 ACA Code of Ethics: Article 2”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pp.6-7).

2005 Code 주요부분(Highlights)

Section A: ACA는 이 섹션에 몇 가지 내용을 더 첨가하였다. 상담자와 내담자 그리고 상담자와 과거 내담자간의 경계 문제와 관련된 기준은 상담전문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들을 반영한다. 이전에는, 모든 '이중 관계'가 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 없이 무조건 내담자와의 모든 비전문적 관계를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그러나 2005년 윤리강령에는 전통적 전문상담관계를 넘어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잠재적으로 유익을 주는 관계들을 언급하고 있는 새로운 기준 A.5.d.가 포함되어 있다. 잠재적으로 유익을 주는 관계와 참작해야 할 요소들을 알기 위해서는 A.5.d.를 참고하

길 바란다.

다음은 한국 심리학회(2006)와 한국 상담심리학회(2005)에서 이중관계 특히 비성적인 관계와 관련하여 어떤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우선 한국 심리학회의 비성적인 이중관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심리학자의 업무 수행능력에 위협요소가 있고 내담자를 착취할 가능성이 있는 이중/다중관계는 비윤리적이며 이를 피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위협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중 혹은 다중관계는 비윤리적이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경우가 전문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내담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며 어떤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

한국 상담심리학회(2005)에서 제시하는 비성적인 이중관계에 대한 규정에서도 역시 상담에서의 이중관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이중관계에 처하게 되면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지만, 내담자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고 상담자가 상담관계를 유지해도 좋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담관계를 유지해도 좋다는 입장이다. 역시 이중관계의 윤리에 대한 판단은 상담자의 주관적 결정에 맡겨져 있다. 윤리규정은 일반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매 상황마다 상담자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위에서 미국과 한국의 주요학회에서 제공하는 비성적인 이중관계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비록 행동에 대한 윤리조항들이 공통적으로 상담자가 내담자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안내를 해주고 있지만 그 조항들은 모든 상황에서 상담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해주고 있지는 않다

(Remley, Hermann, & Huey, 2003, Moleske & Kiselica, 2005). 따라서 상담자는 본인 나름대로의 윤리조항에 대한 이해와 내담자의 최우선 이익에 대한 확실한 평가를 조합해야만 한다(Moleske & Kiselica, 2005).

미국 저명 학회에서의 윤리조항에서도 공통적으로 치료자의 객관성을 손상시킬 수 있고 착취의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상황이나 이중관계를 피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안내가 다중관계 이슈의 복잡성을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돕고 전문가가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안내 역할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이다(Barnett & Yutzenka, 2002; Hedges, 1993; Lazarus, 1998; Mamalakis, 2001; Nickel, 2004; Taylor, 2001). 이렇게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전문가들이 비성적인 이중 또는 다중관계에 대하여 분명한 지향점 없이 스스로 질충해야만 한다(Nickel, 2004).

비성적인 이중관계의 부정적인 효과

학회들이 제시하는 윤리조항에도 나타나 있듯이, 전통적으로 상담학계에서는 성적인 이중관계는 물론이고 비성적인 이중관계도 내담자에게 잠재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와 상담관계 이외의 이중 또는 다중관계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흐름이었다. 물론 최근에는 이중관계의 배경과 잠재적 결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관점에도 관심을 돌리면서 이중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로움과 이로움에 대하여 보다 더 포괄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추세이

지만 여기서는 비성적인 이중관계에 대하여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Craig, 1991; Kagle & Gibelhausen, 1994)의 주장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이 이중관계에 대하여 그렇게 부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여러 학회에서 윤리 강령을 통하여 이중관계를 금지시키는 이유는 이중관계가 치료자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손상시켜 업무수행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취약한 입장에 있는 내담자를 착취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학자(Kagle & Gibelhausen, 1994)들은 이중관계를 ‘경계의 침해(boundary violations)’라고 정의하면서 경계가 허물어진 상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상담자-내담자 상호간의 부담, 효율성의 저하, 착취적인 요소 등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담자와 이중관계에 빠져들게 될 때 자신의 상황이 독특하고 자기네가 주는 도움은 내담자의 특수한 욕구를 채워주는 거라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Gutheil, 1989; Kagle & Gibelhausen, 1994에서 재인용). 하지만 이중관계란 잠재적으로 착취적이며 윤리적으로 전문역할을 수행하는데 경계를 혼선시키고 전문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그의 판단력을 손상시킨다(Kagle & Gibelhausen, 1994).

Kagle와 Gibelhausen(1994)은 사람을 돕는 전문가(여기서는 특히 사회복지사social workers를 지칭)의 이중관계가 내담자에게 얼마나 해로울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과 사례를 발췌하여 제시한다:

“내담자와 개인적인 관계에 들어간 즉 학생 또는 피고용자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거나 내담자에게 전문적 도움

을 주는 대신 어떤 물품을 교환하는 전문가는 전문적인 경계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중관계에서나 전문가의 영향력과 내담자의 취약함은 제2의 관계에 그대로 옮겨지게 된다. 비록 성적인 친밀함까지 일어나지 않더라도 전문가는 내담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 아래에 두는 위치에 서게 된다. 더구나 내담자에 대한 전문가의 전문적인 영향력, 그리고 내담자와의 유대감은 관계가 정식으로 종결되더라도 더 오래도록 이어진다”(p.215).

사례의 예:

“제인(치료자)이 메리(내담자)를 치료한 지 7개월이 되었을 무렵, 메리는 제인의 감정변화에 민감해지게 되었다. 하루는 제인에게 힘든 날이었는데 메리는 제인에게 왜 그런지를 물어보았다. 제인은 자신이 이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들(조)과 문제가 좀 있다고 메리에게 대답해주었다. 메리는 제인이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동받았다. 그 당시에 메리는 비록 자신의 문제를 많이 해결하기는 했지만 제인과 치료를 종결하는 것에 대하여 좀 두려운 상태였다. 치료의 마지막 시간에 제인이 이제부터 서로 친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제안을 하자 메리는 반가웠다. 그리고 나서 두 달 정도 그들은 서로 거의 매일 전화하고 정기적으로 만났다. 그 동안 메리는 조와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었고 제인과는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 제인은 메리와 친구사이가 된 것에 대하여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메리와의

치료관계가 공식적으로 종결된 상태에서 친구관계로 전환한 것이며 이것은 오히려 자연스런 흐름이라고 생각했다.

메리는 제인의 아들인 조와도 친해졌고 제인과의 친구관계가 되어 마치 제인의 가족처럼 되었다. 그러던 중 메리는 제인이 왜 이혼했는지 그 이유가 혹시 제인의 사무실 동료인 팻 때문이 아닌지 추측하기에 이르렀고 사실 여부를 제인에게 물었다. 제인은 쉽게 그렇다고 시인하면서 메리에게 자신의 비밀을 자연스럽게 털어놓게 된 것에 대하여 오히려 마음 놓였고 그 다음부터는 노골적으로 메리에게 팻과의 문제를 상의하게 되었다. 제인은 메리에게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밤이고 낮이고 메리에게 전화하여 팻과의 문제에 도움을 청하였다. 이제는 메리가 제인을 돌보는 사람으로 그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 메리는 제인에게 착취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치료관계의 경계를 허물었고 입장전환이 일어났다. 제인은 메리에게 상담자 역할, 조와 팻 사이에서의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을 요구해왔다. 비록 메리가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라면 어느 정도 선을 그을 수가 있었지만 제인과는 그럴 수가 없었다. 마치 부모가 자식과의 경계를 침해할 때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아이의 입장과 같이 메리는 치료자의 영향력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얼마가 지나서 메리는 더 이상 제인을 책임질 수 없다고 느끼게 되었고 그 문제에 대하여 제인과 상의하였다. 그런데 제인은 메리에게 과거의 치료자로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메리가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하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메리를 비난하고 화를 내었다. 메리는 기가 막혔다. 너무 화가 나고 배신당한 느낌에 죄책감과 바보스런 느낌마저 들었다. 그동안 제인은 정말 절친한 친구였고 조도 자기 남동생 같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두 사람의 친구관계는 이제 예전 같지 않았다. 제인은 메리를 피하기 시작했고 전화도 끊고 만나주지도 않았다. 메리는 그리움과 분노로 뒤엉켰다. 메리는 도움이 필요했는데 이제 어떤 치료자를 만나야 할지 치료자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있을지 막막했다. 결국 메리는 다른 치료자를 찾았지만 치료는 더디게 일어났다. 메리는 치료자를 신뢰하기 힘들었고 자신에 대하여 아주 조금씩 털어놓았다. 치료자를 자꾸 제인과 비교하면서 테스트하고 있었다.

이 사례에서 제인은 두 가지 점에서 막중한 윤리적 침해를 범하였다. 하나는 치료관계의 경계의 한도를 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메리가 힘들어서 제인의 도움을 청했을 때 비난하고 저버렸다는 점이다. 메리는 결국 치료자도 잃고 친구도 잃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제인에게 메리와 치료관계가 이미 종결되었는데, 메리에게는 치료자의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메리는 치료자로서의 제인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제인은 더 이상 메리에게 치료자로서 행동하고 있지 않았다. 결국 메리는 두 번씩이나 버림받은, 즉 치료자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 버림받은 꼴이 되어버렸다. 메리는 분노, 자기비난, 소외되고 버려진 느낌을 받게 되었다. 비록 메리는 다른

치료자를 찾아야한다는 생각에까지는 이르렀지만, 새로운 치료자를 신뢰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pp. 215-216).

위의 사례는 이중관계가 어떤 식으로 내담자를 오랜 동안 치료자의 영향권 안에 묶어둘 수 있으며 제2의 관계가 붕괴됨에 따라 최초의 상담관계도 와해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중관계의 해로운 측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례임에 틀림없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이중관계로 인하여 고통 받은 또는 현재에도 받고 있는 내담자들의 수가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 상담자들은 내담자와 어떤 유형의 이중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이중관계에 대하여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가 과연 어느 정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도 별도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로 다음의 연구결과(Borys & Pope, 1989; Kagle & Giebelhausen, 1994에서 재인용)는 미국 내 전 지역에서 정신건강 전문가로서 일하고 있는 세 부류, 즉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들 4,800명이 과연 어느 정도 성적, 비성적인 이중관계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 문제의 윤리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신이 현재 치료중인 내담자들과 성적인 이중관계를 겪고 있다고 인정한 전문가들의 숫자는 거의 없는 반면에, 비성적인 이중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정한 전문가들의 숫자는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부류의 전문가들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

만 전문가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났다. 남성 전문가들이 여성전문가들에 비하여 더 빈번하게 여성 내담자들과 성적인 혹은 비성적인 이중관계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어떤 행동을 비윤리적으로 간주해야 할지에 대하여 조차 상당히 혼돈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98.3%) 현재 치료중인 내담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언제나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평가하였으나, 이에 반하여 단지 68.4%만이 과거의 내담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행위, 49.9%가 현재 치료중인 내담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행위, 39.0%가 치료중인 내담자를 학생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14.8%가 과거의 내담자와 친구가 되는 것을 ‘결코 윤리적이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사들과 심리학자들이 정신과의사들에 비하여 내담자와의 비성적인 이중관계를 더 윤리적인 행위라고 평가하였다”(Kagle & Giebelhausen, 1994, p.216).

비성적인 이중관계의 긍정적인 효과

비성적인 이중관계가 내담자에게 잠재적으로 해로움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 예를 들어 인간관계가 서로 얽혀있는 작은 도시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상 완전히 피할 수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일어난다는 견해(Boyd-Franklin & Bry, 2000; Herlihy & Corey, 1992; Hill, 2001; Lazarus, 1994; Nickel, 2004; Reamer, 2003; Tomm, 1993; Zur & Lazarus, 2002)가 제기되고 있다.

분명히 어떤 이중관계는 치료과정에서 해가 되지만 연속선상의 다른 측면에서는 제2의 관계가 상담관계를 보완해주고, 용이하게 해주고, 질을 높여준다. 이중관계를 시작하려는 상담자가 항상 실패를 미리 정해 두지는 않는다. 사실 이중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특정한 개인과의 상담을 거절 하는 것은 특수한 여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예를 들어 작은 시골마을)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될 수 있다(Doyle, 1997, Moleski & Kiselica, 2005에서 재인용). 다시 말하면, 서로가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작은 시골마을에서는 내담자가 치과의사가 될 수도 있고 내담자의 어머니가 식당 주인일 수도 있고 내담자가 우리 아이의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중관계를 철저히 피하려면 상담자는 현실적으로 상담이외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없다. 이런 행동은 윤리적인 염려 한 가지(이중관계)로 인하여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한 가지 윤리적인 염려(내담자의 상담 받을 권리)를 저버리게 되는 께이 된다(Moleski & Kiselica, 2005).

Corey와 그 동료들(1998, Moleski & Kiselica, 2005에서 재인용)의 주장에 따르면, 상담자들이 그들의 힘과 영향력을 남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가 있다. “단지 이중관계만 피한다고 착취를 막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실제로 관계에 대한 힘의 차이와 계급에 대한 불필요한 강조를 나타내는 격이 될 지도 모른다.

아이러니컬하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회피했기 때문에 제2의 관계가 상담관계에 해를 끼치게 된다. 다른 문화권에서 온 내담자들과 상담하는 경우에, 종종 치료자들은 경계를 침

해하는 것이 오히려 상담관계를 증진시킨다는 것을 알게 된다.

Hurr(1999, Moleski & Kiselica, 2005에서 재인용)은 다문화적 상담이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문화적 차이에 민감하고 반응적으로 설계된 치료적 기술이라고 요약한다. Lazarus (1994, Moleski & Kiselica, 2005에서 재인용)는 여러 학자들의 반응을 정리하면서, 이중관계에 대하여 너무 지나친 경계는 인위적인 경계로 변형시켜서 파괴적인 금지가 되어 치료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내담자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행위 즉 내담자와 사교하고, 테니스를 치고, 긴 산책을 하고,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 등이 긍정적인 결과의 예들이라고 나열하고 있다.

비성적인 이중관계에 대하여 유연성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관계의 경계에 대한 완고한 집착은 치료에 너무 인공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내담자로부터의 치료적 협조를 촉진시키기보다 오히려 긴장시킨다고 논박 한다(Lazarus, 1998; Nickel, 2004; Tomm, 1993; Zur & Lazarus, 2002). 치료적 역동성이 기술적으로 다루어지기만 한다면 내담자와의 유연한 경계가 친밀, 이해, 연결, 등 궁극적으로 내담자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을 증대시킨다고 주장 한다(Reamer, 2003, Nickel, 2004에서 재인용). 대부분의 효과적인 치료는 내담자의 인생에 깊게 연결 짓고(connection) 관여(involve)함으로써 이루어진다(Nickel, 2004). 여기서 말하는 연결과 관여란 내담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혹은 내담자의 인생 주기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행사에 참석해주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이를 요약하면 어떤 이중관계는 물론 내담자에게 치명적인 해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중관계는 내담자와 치료동맹을 이끌어 치료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서 내담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2005년도 미국상담학회의 윤리강령이 10년 전에 비하여 비성적인 이중관계에 왜 더 구체적이고 관용적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해준다. 최근 학회들의 윤리강령에서는 모든 이중관계가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내담자의 사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내담자에게 오히려 유익을 줄 수 있으므로 구별하여 행동하라고 안내한다. 윤리강령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최근 들어 상담관계의 경계에 대하여 다소 유연한 선택을 권유하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지만, 아직도 어떤 유형의 이중관계를 윤리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어떤 상황을 비윤리적인 것으로 판단해야 할지 모호한 상태에서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다.

비성적인 이중관계에 대한 현실적 요구

비록 정신건강관련 영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중관계를 말리고 있지만 이를 전적으로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셈이다(Taylor, 2001, Nickel, 2004에서 재인용). 더구나 모든 이중관계가 다 해로운 것은 아니며 오히려 어떤 이중관계는 실제로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Zur, 2002, Nickel, 2004에서 재인용). 윤리조항들은 물론 필요하지만, 관계의 경계에 대하여 단지 기초만을 알려주고 있다. 이중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금지는 치료 밖에서 어쩔 도리 없이 혹은 피할 수 없이 내담자와 만나게 되는 치료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Hill, 2001, Nickel, 2004에서 재인용). 전문가들은 이런 여건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이중관계에 대하여 잠재적인 위험과 이익에 대하여 스스로 주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

미국에서도 사람들과 많이 소외되어 있고 거리적으로 외떨어진 시골지역(rural area)에서는 주민들끼리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서 다중관계를 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Nickel, 2004). 이런 사회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와 과거든 현재든 여러 형태의 모임을 통하여 사교, 학교, 교회, 지역사회단체, 사업상 서로 얽혀서 서로에게 중요한 인물로서 마주치게 된다. 이런 경우에 만일 치료자의 거주지와 일터가 동일한 지역인데 치료자가 비전문적 관계에 처한 사람들의 치료를 모두 거부한다면 그것을 잠재적인 내담자 인구의 대부분을 배제시키는 격이 된다(Reilly, 2003, Nickel, 2004에서 재인용). 작은 도시에서는 전문가가 아주 한정되어 있어서 전문치료자가 한명인 곳도 있고 전문치료기관이 한 군데인 경우도 있어서 그런 지역에서는 이중관계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치료자에게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Cobia & Boes, 2000, Nickel, 2004에서 재인용). 따라서 이미 맺고 있는 관계 때문에 잠재적 내담자에게 도움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런 내담자가 어떤 도움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은 혹은 시골 마을에서의 사회적 규준은 주민들끼리 유연하고 침투적인 경계를 요구한다(Zur & Lazarus, 2002, Nickel, 2004에서 재인용). 이런 관습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타 지역의 관습을 따르는 치료자를 불신할지도 모른다(Hill, 2001, Nickel, 2004에서 재인용). 이런 사람들은 타 지역에서 낯선 사람이 도움을 주러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보통 불쾌하게 여긴다. 따라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신

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그 지역 토착민의 품성을 연마해야만 한다(Stockman, 1990, Nickel, 2004에서 재인용).

비성적인 이중관계 또는 다중관계는 작은 시골마을에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중관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Yutzenka, 2002, Nickel, 2004에서 재인용). 더구나 수많은 저자들은 중복되는 관계가 모두 해로운 것은 아니라는 데에 동의한다(Boyd-Fraklin & Bry, 2000; Brownlee, 1996; Catalano, 1997; Herlihy & Corey, 1992; Hill, 2001; Lawton, 1994; Lazarus, 1998; Reamer, 2003; Reilly, 2003; Zur & Lazarus, 2002; Nickel, 2004에서 재인용). 따라서 윤리적으로 수행하려는 전문가들은 각 사례마다의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자신만의 능력을 개발해야만 한다(Mamalakis, 2001; Nickel, 2004에서 재인용).

작은 도시에서는 다중관계가 내담자에게 뿐만 아니라 치료자 자신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미치는 피해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미치는 피해에 대하여도 평가해야만 한다(Mamalakis, 2001; Hill, 2001; Nickel, 2004에서 재인용). 다중관계에 대하여 어떤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생각할 때, 치료자는 지역사회와 규준과 기대에 대하여 민감해야 한다(Barnett & Yutzenka, 2002; Nickel, 2004에서 재인용). 예로, 어떤 지역에서는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예의를 지키는 행동 또는 사업상 필수적인 행동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작은 선물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를 거부하면 그 지역의 관습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Nickel, 2004).

특히 작은 마을에서는 치료자가 다중관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할 잠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현재의 또는 미래의 내담자와 마음 터놓고 분명하게 논의해야 한다(Stockman, 1990, Nickel, 2004에서 재인용). 역할갈등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은 그 위험을 줄일 전략을 짜기 위해서 찾아서 드러내야 한다(Cobia & Boes, 2000; Nickel, 2004에서 재인용). 그렇게 하면 치료자와 내담자는 함께 두 사람이 서로 편안한 행동적인 제한을 결정하는데 협력할 수 있다. 치료이외의 접촉에 대한 이야기는 치료기간 동안 언제라도 필요하다면 이루어져야 한다(Barnett & Yutzenka, 2002, Nickel, 2004에서 재인용).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는 결국 전문가들이 비성적인 이중관계의 현실적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치료자는 윤리판단의 의사결정에 문화적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또한 문화적 특성에 민감해지려는 치료자의 의식적 태도와 행동의 결과라면 그것이 이중관계라 하더라도 성적인 것 이외의 경우에는 오히려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중관계와 우리 문화의 특성

위에서는 제시된 자료는 미국의 작은 시골마을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가 시사해주는 한 가지는 문화적 배경이 이중관계로 인한 경계의 혼선을 다르게 인식하도록 해준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은 인간관계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이중관계에 대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식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중관계 문제란 결국 경계(boundary)

의 침해에 대하여 얼마나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는가에서 출발하는 것이니까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관련지어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문화의 토착심리(indigenous psychology) 현상은 이미 1990년대에 최상진 교수를 중심으로 ‘우리’, ‘정情’, ‘한恨’, ‘눈치’, ‘핑계’, ‘의례적 행위’ 등의 특징별로 연구되었다(한규석, 1997). ‘우리’와 ‘정情’을 강조하는 문화에서 관계의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관계의 경계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사례가 여기저기서 관찰 된다. 부락의 어른인 이장이면 그 부락 사람들의 모든 문제에 관여하고 돌봐주기를 기대하는 즉 부모, 친척, 교육자, 상담자의 역할까지 할 것을 기대하는 문화; 학연, 지연, 그 밖의 어떤 관계라도 한번 엮히면 다른 어떤 관계에서 만나더라도 서로 뭉치고 돌봐줘야 한다고 기대하는 문화, 그래서 흔히 일어나는 청탁 문화; 직장의 상사와 부하관계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자녀의 결혼식까지 초대하는, 즉 직장관계가 개인적인 관계로 연결되는 것을 서로 당연시 여기는 문화; 가까운 친구관계에서는 서로 비밀이 없어야 하며, 개인적인 비밀을 간직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비밀을 나중에 알게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끼도록 은근한 압력이 조성되는 문화; 가까운 관계에서는 서로 돈을 빌려주거나 자신의 소지품을 빌려주는 것이 기대되며 이에 대한 거부는 배신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 가까운 사이에서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우리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기대하는 문화; 너와 나의 경계를 구분하기 보다는 ‘우리’라는 테두리 속에 묶으려는 문화; 부부는 이십이체가 아니라 일심동체라고 규정하는, 따라서 부

부간에는 어떤 사생활도 없어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게 하는 문화;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문제가 곧 자식의 문제이며 자식의 문제가 곧바로 부모의 문제라고 간주하는 문화, 그래서 심한 경우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즉 자녀의 시간 관리를 맡아주고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고 강요하는 것을 심지어 ‘좋은 부모’라고 믿는 문화; 홀로된 부모가 연애를 하더라도 자식의 눈치를 봐야하고 자식의 허락을 받으려는 문화; 식당의 종업원을 부를 때나 동네 사람들을 호칭할 때나 낯선 사람을 대할 때도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따져가며 ‘언니’, ‘아줌마’, ‘이모’ 등의 호칭을 부르면서 친척관계로 동일시하려는 문화; 친구의 딸에게 ‘이모’라고 부르도록 허용하고, 친밀한 관계의 발달과정에서도 ‘오빠가 아빠 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 즉 친구관계를 가족관계로 동일시하다가 이성관계로의 변화를 자연스런 발전과정이라고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문화; 부모에게서 버려진 수많은 소년 소녀 가장들이 동생들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대행하면서 아동을 보내는 즉 형제가 부모 역할을 대행하는 경계의 혼선을 아동학대로 간주하거나 개선해주려는 사회적 노력보다는 그런 여건에서의 경계 침해를 수용하는 아이에게 ‘기특하다’ ‘장하다’고 사회적인 강화를 해주는 분위기의 문화이다. 이런 문화권에서 경계의 침해와 혼선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며 경계의 구별에 대한 학습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중관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문화의 특성은 상담 장면에도 종종 반영된다. 한번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인연을 맺으면 끝까

지 인생의 동반자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상담을 받고 특별하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면 으레 상담자에게 식사 초대나 선물을 하고 싶어 하고 자신의 다른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인사를 시키고 싶어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까운 친인척과 중매로 연결하여 또 다른 가족관계로 이어나가고 싶어 한다. 상담을 받고나면 내담자는 상담자가 자신의 영원한 보호자가 될 것인 양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되어 상담 이외의 시간에 언제라도 친절하게 만나줄 것을 기대하고, 상담이 종결되어도 자연스럽게 친구관계로 이어지거나 정기적인 만남을 고대한다. 상담자 역시 한 번 상담관계를 맺고 나면 상담이 종결되고 내담자와 다른 장면에서 만나게 되는 이중관계에 접할 때 회피하는 것이 오히려 거북하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진다. 집단상담이 끝나면 집단원들은 자기네끼리 다시 사교모임을 만들어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더 나아가서 로맨틱한 관계로까지 발전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희망한다. 집단상담을 종결하더라도 상담자가 지속적으로 인생의 멘토(mentor)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경계의 구분은 분명히 개인주의 문화의 산물이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That's none of your business!”라고 경계의 침해를 엄격하게 다스리는 문화에서 이중관계를 경계의 침해라고 단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식이 부모의 문제를 떠맡고 있으면 ‘그것은 부모의 문제이지 네 문제가 아니다’라고 문제의 경계를 분명하게 그어주는(Ellis의 상담사례 중에서, 홍경자 역, 1994) 문화에서는 어려서부터 경계에 대한 존중과 침해에 대한 질책을 확실하게 가르친다. 이 문화권에서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방을 따로 쓰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시간에

대한 경계도 분명하게 구별 짓도록 가르친다. 어렸을 때부터 8시면 취침에 들도록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 따라서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까지도 사무실에 나와 일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칭송하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 관리에 미숙한, 일에 서투른 사람으로 취급한다. 이 문화권에서는 건강한 인간관계란 ‘내가 존재하고, 네가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 한다’고 가르친다. 가까운 사이에서라도 나와 너의 구분, 그리고 함께 나누는 부분에 대한 경계를 확실하게 가르친다. 다시 말해서 부부도 일심동체가 아니라 ‘이심이체’가 되어야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이동식, 1985) 논리에 터하고 있다. 이 사회에서는 알코올 중독 가정의 자녀가 자라면서 배우게 되는 가장 큰 문제를 경계의 혼선이라고 본다. 즉 어려서부터 중독부모를 보살피느라고 자식이 부모의 역할을 대행하면서 부모-자식 관계의 경계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학습하지 못하여 성장해서도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Woititz, 1985). 서양 심리학, 특히 게슈탈트 상담이론에서는 인간이 환경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일으키는 경계 장애의 정도를 정신건강의 한 가지 척도로 평가한다(김정규, 1995).

서양의 문화적 특성과는 달리, 갓 태어난 아이가 부모와 한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이 당연시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부모와 한 방에서 잠을 자도록 허용되는 우리 문화에서 경계의 구분은 생소할 수밖에 없다. 경계의 구분이 어려서부터 학습되어 있지 않고 이를 오히려 각박함, 비인간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문화권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이중관계에 대한 경직된 윤리규정 또는 경직된 의사결정모델의 운영은 양자 간에 서로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오히려 우리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도 다분하다.

비성적인 이중관계의 윤리수준 평가 모델

“경계 문제는 치료자들에게 복잡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경계를 가로지른 결과가 치료적 진전에 막대한 효과가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심각한 지울 수 없는 해를 가져온다는 인식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다”(Smith & Fitzpatrick, 1995, Moleski & Kiselica, 2005에서 재인용). 한 전문가가 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다른 전문가에게는 경계의 침해로 간주되기도 한다. “심지어 널리 알려져 있는 저명한 학자들도 내담자와 이해하기 힘든 치료를 했다. 예로, 프로이드가 그의 친구와 자기 딸을 분석했던 일, 위니컷이 자기 환자를 치료의 일부로서 집에 불러들인 일, 멜라니 클라인이 자기 휴가에 내담자를 동반하여 이 기간에 그녀의 호텔방에서 내담자를 2시간 동안 분석한 일”(Smith & Fitzpatrick, 1995, Moleski & Kiselica, 2005에서 재인용)이 있다. 이는 이중관계의 상황에 따라 상담자는 주관적으로 윤리수준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상황 자체가 경계를 침해한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침해는 허용범위인지에 대하여 치료자는 평가해야 한다. 이런 요구에 따라 치료자의 주관적 평가에 도움이 될 만한 잣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Corey와 그의 동료들은(Corey et al. 1998, Moleski & Kiselica, 2005에서 재인용) 이중관계 시에 따라야 할 일반적 규칙을 제시하였다.

1. 출발에서부터 건강한 경계를 마련하라.
2. 내담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동의의 확실하게 구하라. 그리고 내담자와 잠재

적인 위협과 이중관계의 이익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3. 내담자와 미리 예견하지 못한 문제들과 앞으로 일어날 갈등에 대하여 언제라도 이야기할 태도를 취하라.
4. 어떤 딜레마이든시간에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라.
5. 이중관계가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해로움의 위험 수준이 높을 때는 슈퍼비전을 받으라.
6. 치료일지에 어떤 이중관계이건 기록하라.
7. 이중관계에 관여하는데 대한 당신 자신의 동기를 검토하라.
8. 필요하다면, 내담자를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라.

Kitchener(1988, Brownlee, 1996에서 재인용)의 의사결정모델은 역할갈등이라는 개념과 유해성의 위험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세 가지 요인에 기초하고 있다. 세 가지 요인이란,

“첫째, 역할들 사이에서 양립할 서로간의 기대에 대한 불일치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해성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둘째, 각각의 역할과 관련된 의무가 다양함에 따라서 쪼개진 성실성으로 인하여 위험수준은 증가하고 객관성은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치료자와 내담자간에 명성과 힘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착취의 위험수준이 더 높아진다”(p. 500).

Gottlieb(1993, Brownlee, 1996에서 재인용)의 의사결정모델은 3가지 요인, 즉 힘(power), 기간(duration), 종결(termination)에 근거하고 있다.

“이 모델의 기본 가정은 모든 이중관계가 불가피하게 착취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는 최소한의 개인적 영향력만을 미치는 낮은 수준의 힘에서부터 심오한 개인

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높은 수준의 힘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가 다양하다는 관점을 인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담기간이란 얼마간의 치료를 요하는가의 문제이며 어떤 상황은 단지 짧은 단기치료를 요하는가하면 어떤 상황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기도 한다. 마지막 요인인 종결이란 치료와 치료 후 단계를 위하여 구체적인 시간대가 정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내담자가 무한정의 치료와 치료관계를 요구할 것 같은지를 말한다.

이 모델의 첫 번째 단계는 세 가지 요인의 측면에서 현재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세 가지 요인의 측면에서 미래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상담자가 이런 관계들 속에서 역할 대립이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만일에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가 세 가지 요인에서, 낮거나 중간 정도의 갈등과 힘의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중관계를 지속할 결정을 내리게 될지도 모른다. 네 번째 단계는 객관적인 상태로 동료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이중관계 때문에 발생할 여지가 있는 가능한 모든 문제를 놓고 내담자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윤리적인 문제가 존재하지만 힘의 불균형과 착취의 위험수준이 낮아 보이면 적절한 결정을 내릴 때 상식적 수준에서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만일 두 사람이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역할의 관계였지만 그것이 특별히 과거에 일어났던 관계라면 비전문적인(상담관계 이외의 이중관계) 관계가 제한적이거나 이미 끝난 관계일 수 있다. 이런 경우 만일 다른 상담자가 그 내담자를 맡을 수 있다면 그 상담자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일에 상담 서비스가 아주 간단하고 강

도가 낮고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예상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아마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치료계약과 객관적인 자문을 이용하는 것이 역할기대와 역할경계를 확립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pp. 501-502).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중관계의 상황 한 가지를 예로 들어 Gottlieb의 모델을 적용하여 상담 지속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 본다.

상담자(교수)는 대학에서 한 교양과목을 맡고 있을 때였다. 둘째시간이 끝나고 강의실을 떠나려고 하는데 한 남학생이 뒤따라 나오면서 “교수님과 상담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였다. 일단 교수는 그 학생을 연구실로 데려가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그 학생은 지난시간에 결석을 했고 사실은 이성문제로 인하여, 좀 더 자세하자면 여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자살결심을 했고 약을 먹었는데 마침 친구의 발견으로 위세척하고 살아났다고 하였다. 그 학생은 많이 우울해보였으며 그 문제로 교수에게 상담을 요청하였다.

이 상황에서 상담자이면서 그 학생의 강의를 맡고 있던 교수는 분명히 학생과 이중관계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에 위의 모델을 적용하여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지 살펴 본다. 교수는 그 학생과 처음 만난 당시 지방대학의 대학상담소에서 소장 직을 맡고 있었고 상담소에는 소장직과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조교 2명이 있었으며 그 조교들은 상담을 공부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 상담을 해줄만한 다른 전문가가 없었다. 그 대학에서 그 교수

만이 전문상담자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그 교수가 학생을 상담하게 된다면 상담관계 이외에 교수-학생 관계라는 이중관계에서 야기될만한 윤리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 상담관계로 인하여 강의실에서 학생에게 객관적일 수 있을지, 강의시간에 경험하는 학생과의 관계가 상담 장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를 예상하면서 상담자의 마음은 무거울 수 있다. 하지만 상담자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상담전문가가 그 지역에서 용이하지 않다는 점과 그 학생의 문제가 또다시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위급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여 쉽게 이중관계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다음의 단계별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살펴본다.

첫째 단계에서는 내담자(학생)와의 현재 관계를 힘, 시간, 종결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가 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로 인하여 두 사람 관계에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물론 교수는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높은 수준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상담관계와 교수-학생 관계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학점제도가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점, 등급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pass/fail 로 평가한다는 점, 평가기준이 비교적 객관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학생에게 미칠 영향력의 힘 정도를 중간정도로 평가할 수도 있다. 다음에 한 학기만 끝나면 그 학생과 다시 강의실에서 만날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교수-학생 관계 즉 학점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는 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이다. 한 학기가 지나면 그 학생과의 이중관계는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남게 된다. 상담기간 또한 위기상담(자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때까지)으로 평가되므로 3-4회기의 단기상담으로 종결될 것이 예상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세 가지 요인의 측면에서 미래의 관계를 평가해보아야 한다.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이 교양과목이므로 교수-학생 관계가 한 학기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미래의 관계는 이 경우에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역할대립의 정도를 살펴봐야 한다. 상담자가 상담자로서 그리고 교수로서의 역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수행하는데 어떤 역할대립의 갈등을 경험할 것인지 그 것이 강의실에서 학생과의 관계에 그리고 치료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학생의 문제가 극히 위기 상황에서 단기상담을 요한다는 점, 교양과목이기 때문에 한 학기가 끝나면 교수-학생의 관계가 제한적이어서 내담자의 정보를 교수-학생 관계에서 착취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학점제도가 비교적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서 역할대립의 갈등이 중간 정도라고 평가내릴 수 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객관적인 상태로 동료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그 당시 전문상담자가 주위에 용이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담을 공부하는 과정중의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사례연구회'가 있었다. 상담자는 그 사례를 사례연구회 회원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가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중관계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의 문제들을 하나씩 논의하면서 상담관계를 시작할 것인지 학생과 결정하는 것이다. 위의 단계에서 상담자가 예상하고 평가하고 우려하는 모든 문제들, 즉 교수-학생 관계이면

서 상담관계를 시작하게 될 때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가 이중관계로 인하여 받게 될 일정한 부담과 영향에 대하여 내담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난 후에 상담관계를 시작할 것인지 결정한다.

논의 및 결론

상담자 교육에서 성적인 이중관계의 위험성은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비성적인 이중관계도 내담자에게 잠재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은 강조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비성적인 이중관계에 대한 사례들 역시 논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비성적인 이중관계에서 오는 내담자의 고통 역시 성적인 관계의 경우와 유사한 내용의 고통이 보고된 바 있다(Pope & Bouhoutsos, 1986; Kagle & Giebelhausen, 1994에서 재인용).

이중관계를 맺는 것이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따지기에 앞서 우리는 왜 윤리가 상담에서 중요한 문제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짐승들의 세계에서는 윤리적인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만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이다. 윤리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내용을 서로 지키려는 사회적인 약속이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에서 문화적 가치, 특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상담에서의 윤리는 내담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내담자의 이익에 최우선하기 위한 것이 무엇이지를 다룬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상담자가 아직 미성숙할 때 이중관계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로간의 경계를 높이 쌓고 상담관계에만 몰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담자가 처해있는 환경, 문화적 배경, 욕구를 존중하여 허락하는 이중관계가 오히려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경우도 있다. 내담자가 신뢰하지 못하는 상담자를 찾느니 자신이 평소에 신뢰하는 은사에게 상담을 받고 싶어 할 때 상담자는 이를 ‘이중관계’라고 하여 무조건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수락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상담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겠는가?

첫째, 상담자는 자기성숙의 수준을 먼저 평가해보아야 한다. 앞서 연구에서(Reamer, 2003)도 상담자가 치료 역동을 기술적으로 대처할 수만 있다면 내담자와의 경계에 대하여 유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범모(2007)의 책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어찌 다 불교의 고승을 만나거나 덕망 있는 신부를 만나면, 그의 신앙·학식·사상의 깊이에 위압받기보다는, 우선 그의 더없이 편안해 보이는 얼굴, 무조건 나를 받아들이는 듯한 온화하고 인자한 얼굴에 먼저 감명을 받으면서 나도 편안하고 ‘행복’해진다”(pp. 312). 이렇게 달관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면 이중관계에 얽힌다 하더라도 내담자의 이익을 착취하거나 객관성을 잃어 궁극적으로 내담자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로저스가 제시하는 상담의 조건을 온전하게 갖춘 상담자 역시 내담자에게 일정한 기술을 갖춘 하나의 전문가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를 가치판단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고 내담자의 입장에서 공감해주고 상담자 자신의 안팎이 일치하는 성실한 인간으로서 모습을 갖춘 소위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서 내담자를 대한다면 이중관계에 얽힌다고 해서 내담자에게 해를 입히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달관의 경지에 오른 상담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대부분의 상담자가 자기인식, 자기수용, 자기성장의 과정 중에 있다고 본다면, 그 과정 중에서 내담자와 이중관계에 얽힐 때 본의 아니게 수없는 실수를 범하여 내담자에게 해를 입히게 된다고 전제해도 합당하다. 그런 점에서 이중관계에 대한 경고는 공감된다.

둘째,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가 정을 중시하는 문화권의 사람들이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수시로 점검해봐야 한다. 서로 여러 가지 관계를 한꺼번에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권에 젖어있는 사람이라면 상담관계에서 이중관계에 얽히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점검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중관계에 빠져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치료자의 의도 없이 서로 간에 어떤 것이 이중관계인지도 모르면서 상담관계의 연장으로 인식되어 이중관계에 말려들게 된다. 상담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뒤풀이에 참석하게 된다거나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게 된다거나 하는 행동 모두가 이중관계라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상담과정 전체를 통하여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자신의 욕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하여 항상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 경계의 침해는 상담자가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즉 상담자 편에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치료자가 치료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적 욕구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려면 자기인식(self-knowledge or self-awareness)은 필수적이며(Reamer, 2003, Nickel, 2004에서 재인용), 치료자 자신의 자기인식은 치료자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내담자를 이용할 기회를 줄일 수 있도록 해준다(Montgomery & DeBell, 1997, Nickel, 2004에서 재인용).

넷째, 이중관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에 대하여 상담자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접할 기회와 이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어야 하며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상담자가 이중관계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중관계를 맺는 경우와 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맺는 경우에 상담자의 예방과 대처 방식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선 상담자가 이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 상담자는 이중관계에 얽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이를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이중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내담자와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할 기회를 갖고 내담자와 함께 합의된 상태에서 서로의 경계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내담자에게 해가 되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까지 논의되어질 수 있다.

다섯째, 상담자가 특정한 내담자와의 이중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점이 무엇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중관계의 상황은 사례마다 다르고 각 상황에서 일어나는 딜레마에 대하여 상담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모델을 찾아 적용해보는 훈련도 필요하다. 이중관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상담자의 객관적인 평가의 상실, 내담자에게 가는 잠재적 착취의 위험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본 Gottlieb의 모델을 적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현실적으로 이중관계를 피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어떤 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봐야 하는지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문헌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에 더하여 이중관계에 대한 대처방안을 결론짓는다. 이중관계는 성적으로 얽히지 않더라도 경계의 침해로 일으켜 내담자를 혼란시키고 잠재적으로 내담자의 취약함을 착취하게 되고 상담자의 능력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하여 상담자는 자기인식과 이에 대한 점검이 수시로 필요하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경계 침해로 간주될 것이지도 주관적인 평가를 요하고 문화적 특성과 현실적 여건에 따라 내담자와의 이중관계가 오히려 치료관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므로 매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세심한 평가는 윤리조항이 안내해주는 것도 아니므로 치료자 스스로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윤리수준을 평가하는 한 가지 모델로서 치료자의 영향력과 힘의 수준, 치료기간과 종결 후의 상황, 등에 대한 평가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중관계로 인한 잠재적 유해성에 대하여 치료자는 사전에 그리고 치료과정 전 과정에 걸쳐서 내담자와 이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고 문서로 기록하고 문제가 야기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 이중관계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내담자에 대한 착취와 객관성 상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슈퍼비전이나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지속한다.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이중관계로 인하여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는 많은 사례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양적인 분석이 아니라 질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윤리조항이 너무 일반적이고 모호하고 매 상황마다 상담자가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

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사례들은 보고된 것이 있지만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관련하여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유형의 이중관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런 이중관계로 인하여 내담자는 어떤 경험을 하며 상담자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상담에서 이중관계에 대하여 상담자와 내담자는 각자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연구는 상담자교육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지, 그리고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에게 어떤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게 된다. 셋째, 위의 경험적인 연구들을 토대로 이중관계에 대한 윤리규정의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들과 더불어 상담자 교육에서는 상담의 이론과 기술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담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윤리를 하나의 교과목으로 분리시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 대학원과정에서는 상담에서의 윤리 문제를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내용에 포함시킬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런 변화가 상담자의 윤리의를 높이며 내담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 김정규 (1995). *계슈탈트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 이동식 (1985). *현대인의 정신건강*. 서울: 불광출판사.
- 정범모 (2007). *그래, 이름은 뭐고?* 서울: 나남출판사.
- 한규석 (1997). *사회심리학에서의 문화 비교*

- 연구: 현황 및 세계화속의 과제. 한국심리학회 학술위원회 편,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연구. pp. 87-172. 서울: 성원사.
- 홍경자 역 (1984). 이성을 통한 자기성장-지정요법(RET)의 사례집. 서울: 탐구당.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1995). *ACA Code of Ethics & Standards of Practice*.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05). *ACA Code of Ethics*.
- APA (2002). Ethical principles of psychologists and code of conduct.
- Anderson, S. K., & Kitchener, K. S. (1996). Nonromantic, non-sexual posttherapy relationships between psychologists and former clients: An exploratory study of critical incident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7, 59-66.
- Barnett, J. E. & Yutrzenka, B. A. (2002). Nonsexual dual relationships in professional practice, with special applications to rural & military communities, in A. A. Lazarus & O. Zur (Eds.). *Dual relationships and psychotherapy*(pp.273-285).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Borys, D. S. & Pope, K. S. (1989). Dual relationships between therapist and client: A national study of psychologists, psychiatrists, and social worker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0, 283-293.
- Boyd-Franklin, N. & Bry, B. H. (2000). *Reaching out in family therapy: Home-based school & community interventions*. New York: Guilford Press.
- Brownlee, K. (1996). Ethics in community mental health care: The ethics of non-sexual dual relationships: A dilemma for the rural mental health professional.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2(5), 497-503.
- Catalano, S. (1997). The challenges of clinical practice in small or rural communities: Case studies in managing dual relationships in & outside of therap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logy*, 27(1), 23-35.
- Cobia, D. C. & Boes, S. R. (2000, Summer). Professional disclosure statements and formal plans for supervision: Two strategies for minimizing the risk of ethical conflicts in post-master's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8(3), 293-296.
- Congress, E. (2001, Spring/Summer). Dual relationships in social work education. Report on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7(2), 255-267.
- Corey, G., Corey, M. S. & Callanan, P. (1998). *Issues and ethics in the helping professions*.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Glossoff, H. L. & Kocet, M. M. (2005). Highlights of the 2005 ACA Code of Ethics.
- Gottlieb, M. C. (1993). Avoiding exploitive dual relationships: A decision-making model. *Psychotherapy*, 30, 41-48.
- Gutheil, T. (1989).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oundary violations, and patient-therapist sex.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6(5), 597-602.
- Hedges, I. E. (1993, July/August). In praise of dual relationships. Part II: Essential dual relatedness in developmental psychotherapy. *The California Therapist*, 5(4), 42-46.
- Herlihy, B. & Corey, G. (1992). *Dual relationships*

- in counseling*. Alexandria, VA: American Association for Counseling & Development.
- Hill, M. R. (2001, July). Family therapists & religious communities: Negotiating dual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50(3), 199-216.
- Hurr, E. L. (1999). *Counseling in a dynamic society: Contexts & practice for the 21st century*.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Kagle, J. D. & Giebelhausen, P. N. (1994). Dual relationships and professional boundaries. *Social Work*, 39(2), 213-220.
- Lawton, M. J. (1994, February). Friendship, foundation of therapeutic relationships, is imperiled. *Addiction Letter*, 10(2), 8.
- Lazarus, A. A. (1994). How certain boundaries & ethics diminish therapeutic effectiveness. *Ethics & Behavior*, 4(3), 255-261.
- Mamalaskis, P. M. (2001, July). Evaluating potential dual relationships: A response to Butler & Gardner. *Family Relations*, 50(3), 214-220.
- Moleski, S. M. & Kiselica, M. S. (2005). Dual relationships: A continuum ranging from the destructive to the therapeutic.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3, 3-11.
- Montgomery, M. J. & DeBell, C. (1997, October). Dual relationships & pastoral counseling: Asset or liability? *Counseling & Values*, 42(1), 30-41.
- Nigro T. (2004). Counselors' experiences with problematic dual relationships. *Ethics & Behavior*, 14(1), 51-64.
- Nickel, M. (2004). Professional boundaries: The dilemma of dual & multiple relationships in rural clinical practice.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Journal*, 1(1), 17-22.
- Pope, K. & Bouhoutsos, J. (1986). *Sexual intimacy between therapists and patients*. New York: Praeger.
- Reamer, F. G. (2003, January). Boundary issues in social work: Managing dual relationships. *Social Work*, 48(1), 121-134.
- Reilly, D. R. (2003). Not just a patient: The dangers of dual relationships. *Canadian Journal of Rural Medicine*, 8(1), 51-53.
- Remley, T. P., Hermann, M., & Huey, W. W. (2003). Introduction. In T. P. Remley, M. Hermann, & W. W. Huey(Eds). *Ethical and legal issues in school counseling* (2nd ed., pp.13-16). Alexandria, VA: 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
- Smith, D., & Fitzpatrick, M. (1995). Patient-therapist boundary issues: An integrative review of theory and research.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6, 499-506.
- Stockman, A. E. (1990). Dual relationships in rural mental health practice: An ethical dilemma. *Journal of Rural Community Psychology*, 11(2), 31-45.
- Taylor, M. L. (2001). Ethical issues for psychologists in pain management. *Pain Medicine*, 2(2), 147-154.
- Tomm, K. (1993). The ethics of dual relationships. *The California Therapist*, 7-19.
- Woititz, J. G. (1985). *Struggle for intimacy*. Health Communications, Inc.
- Zur, O. & Lazarus, A. A. (2002). Six arguments against dual relationships & their rebuttals. In A. A. Lazarus & O. Zur (Eds.), *Dual*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relationships & Psychotherapy(pp.3-19).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원 고 접 수 일 : 2007. 9. 12

수정원고접수일 : 2007. 10. 31

게 재 결 정 일 : 2007. 11. 20

Ethical Issues of Non-Sexual Dual Relationships

Weasook Park

University of Ulsan

Hangja Kho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ounselors may face the secondary or the third non-sexual relationships with their clients with intention or with circumstance. The study pursued to review ethical issues of non-sexual dual or multiple relationships without sexual intimacy. Even though ethical codes relating to dual relationships are provided by the associations of counseling, the guidelines are too general and vague to apply to every case of counseling situations and the studies in the mental health fields have shown somewhat contrary and confusing opinions of non-sexual dual relationships. The studies of sexual dual relationships have reached to a strongly consisting opinion that the relationship could be harmful to the clients. However, the researchers have asserted broad range of opinions about non-sexual dual relationships from it could be harmful to even both beneficial and therapeutic to the clients. Even ethical codes provided by associations of counseling have changed in a period of time in terms that to what extent non-sexual dual relationships should be considered to be ethical. In that sense, the study compared several ethical codes relating to non-sexual dual relationships, reviewed previous research articles, introduced ethical models to evaluate the relationships, and discussion and conclusion were made.

Key words : counseling relationship, dual or multiple relationship, non-sexual relationship, boundary, ethics of counseling